

-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-

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행위

□ 할 수 있는 행위 「공직선거법 제60조의 3」

- 초청받은 행사에 참석한 예비후보자를 단순히 내빈으로 소개하고 의례적인 인사말과 행사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
-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
-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의례적인 악수·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 - ※ 행사 참석자들에게 명함 배부 가능
- 예비후보자가 본인의 성명, 슬로건 등이 기재된 점퍼 등을 착용하고 행사에 단순히 참석하는 행위
 - ※ 단, 어깨띠·점퍼 등을 착용하고 인사말을 하는 행위는 금지
- 예비후보자가 일반적·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
-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

□ **할 수 없는 행위** 「공직선거법 제60조의 3」

-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지지호소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
- 예비후보자가 본인의 성명, 슬로건 등이 기재된 어깨띠, 점퍼를 착용하며 행사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행위
- 관공서, 공공기관의 국·과 등 일반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(호별 방문 금지)
-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‘예비후보’라고 적힌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
-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어깨띠, 점퍼 등을 착용하고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
- 특정의 예비후보자만을 행사 등에 초청하는 행위
-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호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